

의안번호	2217520
의 퇴 인	이원택의원
회 답 일	2026. 7. 14.
추계번호	26D1479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비용추계서】

I. 비용추계 결과

- (일부추계) 개정안에 따라 독립유공자에 동학농민혁명 2차 봉기 참여자를 포함하는 경우 보상금, 생활조정수당 등의 지급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는 2027년 104억 9,900만원, 2031년 125억 2,000만원 등 향후 5년 동안 총 574억 6,100만원(연평균 114억 9,200만원)을 상회할 것으로 추계됨

[표 1]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2027~2031년

(단위: 백만원)

	2027	2028	2029	2030	2031	합계	연평균
독립유공자에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포함 (안 제4조)	10,499	10,961	11,481	12,000	12,520	57,461	11,492

- 주: 1. 독립유공자에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포함(안 제4조)은 의무규정 재정수반요인이고, 독립유공자 예우 대상 범위가 확대됨에 따라 보상금, 생활조정수당, 교육지원, 의료지원, 대부지원, 양로지원, 요양지원 및 재가복지서비스 등에서 추가재정소요 예상
2. 다만, 유족 등 지원대상자 수를 합리적으로 추계하는 데 한계가 있어 교육지원, 의료지원, 대부지원, 양로지원, 요양지원 및 재가복지서비스 등은 추계에서 제외함
3. 따라서 본 추계는 추계가 가능한 보상금과 생활조정수당에 한정하여 추계한 결과로 향후 실제 추가 재정소요는 이를 상회할 것으로 예상됨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II. 재정수반요인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1	안 제4조 (적용 대상자)	이 법의 적용대상자를 1894년 7월 일제의 경복궁 점령사건(갑오왜란) 전후부터 1945년 8월 14일까지 국내외에서 일제의 국권침탈을 반대하거나 독립운동을 위하여 일제에 항거한 사람(「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등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1894년 9월에 2차로 봉기한 항일무장투쟁 참여자 포함)으로 규정	의무규정

Ⅲ. 비용추계의 전제와 상세내역

1. 재정수반요인별 추계 여부

연번	조·항(조제목)	추계여부	비고(추계 미 실시 사유)
1	안 제4조(적용 대상자)	○	-

2. 비용추계의 총괄적 전제

- 개정안에 따라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등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1894년 9월에 2차로 봉기한 항일무장투쟁 참여자(이하 “2차 봉기 참여자”라 한다)가 독립유공자에 추가되어 현행법에 근거한 보상금, 생활조정수당, 교육지원, 의료지원, 대부지원, 양로지원, 요양지원 및 재가복지서비스 등에서 추가재정소요 발생
 - 현행법은 적용 대상을 일제의 국권침탈(1895년 을미사변으로 해석) 전후로부터 1945년 8월 14일까지 국내외에서 일제의 국권침탈을 반대하거나 독립운동을 위하여 일제에 항거한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음
 - 개정안은 일제의 국권침탈을 1894년 7월 일제의 경복궁점령사건으로 명시하고 그 전후로부터 1945년 8월 14일까지 국내외에서 일제의 국권침탈을 반대하거나 독립운동을 위하여 일제에 항거한 사람에 동학농민혁명 2차 봉기 참여자를 포함하여 독립유공자로서의 예우를 적용하도록 함
 - 1895년 을미사변·1905년 을사조약·1910년 한일합병조약 등의 대상자는 1962년부터 기 서훈되어 이미 이 법에 따른 지원대상임
- 본 추계에서는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를 2차 봉기 참여자에게 보상금과 생활조정수당을 지급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으로 한정하여 추계
 - 교육지원, 의료지원, 대부지원 등은 지원대상자 수를 합리적으로 추계하는

데 한계가 있어 추계가 곤란하고, 양로지원, 요양지원 및 재가복지서비스는 기존 예산 안에서 충당 가능할 것으로 보여 추계 대상에서 제외함

- 양로지원은 현재 입소정원(215명) 기준으로 연간 34억원씩 정액으로 일정하게 지원되고 있어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
- 요양지원의 경우 개정안에 따라 추가로 등록되는 독립유공자 본인과 배우자는 없을 것이므로 추가재정소요는 없을 것으로 예상
- 재가복지서비스는 현행 복지인력을 활용하여 서비스 제공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어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

- 개정안 부칙에서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과 법안 심의의결 기간 및 예산 확보 등을 고려하여, 추계기간은 2027년부터 2031년까지 5년으로 함

3. 재정수반요인별 상세 추계내역

- 개정안에 따라 2차 봉기 참여자를 독립유공자에 포함하는 경우 보상금, 생활조정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므로 추가재정소요 발생
- 본 추계에서는 2차 봉기 참여자 수에 보상금과 생활조정수당 월 지급단가, 12개월을 곱하여 추가재정소요 산출
 -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과 국가보훈부 자료에 따르면, 2024년 10월 기준 2차 봉기 참여자 등록인원은 481명

[표 2]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등록 현황(2024년 10월 기준)

(단위 : 명)

	신청 등록 (유족 있음)	직권 등록 (유족 없음)	합 계
1차 봉기 참여자	32	190	222
2차 봉기 참여자	481	2,819	3,300
미구분	42	283	325
합 계	555	3,292	3,847

주: 1. 1차 봉기 참여자: 1894년 3월~8월 참여 사실 확인된 자
 2. 2차 봉기 참여자: 1894년 9월 이후 참여 사실 확인된 자
 3. 1·2차 봉기 모두 참여한 자: 2차 봉기 참여자로 구분
 4. 미구분: 참여 사실만 확인되고, 1차 또는 2차 봉기 참여 구분할 수 없는 경우
 자료: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국가보훈부

□ (보상금) 2차 봉기 참여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는 경우, 추가재정소요는 2027년 104억 4,700만원, 2031년 124억 6,800만원으로 추정

- (대상자 수)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481명 모두 유족이 있으므로 이들 모두 선순위자로서 보상금을 받으며, 추계 기간 동안 사망자 없이 유지되는 것으로 가정
- (월 지급단가) 독립유공자의 보상금 지급단가는 등급 및 훈격별로 다르게 적용되고 있어, 2023년 월평균지급액 151만원¹⁾에 보상금 단가의 최근 5년간 연평균상승률 4.6%²⁾를 적용

[표 3] 보상금 지급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2027~2031년

구분	2027	2028	2029	2030	2031
대상자 수(a, 명)	481	481	481	481	481
월 지급단가 (b, 만원)	181	189	198	207	216
추가재정소요(a×b×12, 백만원)	10,447	10,909	11,429	11,948	12,468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 (생활조정수당) 2차 봉기 참여자에게 생활조정수당을 지급하는 경우, 추가재정소요는 2027년 5,200만원, 2031년 5,200만원으로 추정

- 생활조정수당은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중 생활이 어려운 선순위자에 대하여 매월 일정액을 지급하는 사업³⁾
- (대상자 수) 2차 봉기 참여자 481명 중 생활수준이 어려운 대상자는 16명으로 추정되고, 추계 기간 동안 사망자 없이 유지되는 것으로 가정
 - 독립유공자 및 유족 중 생활조정수당 대상자 비율인 3.4%⁴⁾를 적용

1) 151만원 = 독립유공자 및 유족 보상금 지급액 1,211억 2,000만원 ÷ 독립유공자 및 유족 지급 대상자 6,674명 ÷ 12개월

2) 독립유공자 중 건국훈장 5등급 유족의 보상금 단가의 최근 5년간 연평균증가율 4.6%(2020년 1,557천원, 2021년 1,604천원, 2022년 1,684천원, 2023년 1,777천원, 2024년 1,866천원)

3) 이 법 제14조(생활조정수당) ① 국가보훈부장관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기준 중위소득 등 생활수준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생활조정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1. 독립유공자

2. 독립유공자의 유족 중 보상금을 받는 사람

3. 독립유공자의 유족 중 보상금을 받는 사람이 없는 경우에는 제5조제1항 각 호의 순위에 따른 선순위자 1명

4) 3.4% = 302명(2024년 생활조정수당 지급 독립유공자 및 유족수) ÷ 8,936명(2024년 전체 수권 독립유공자 및 유족 수)

- (월 지급단가) 생활조정수당은 3인가구, 4인가구로 구분한 후, 각각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자, 40% 이하자, 30% 이하자로 차등 지급하고 있어, 본 추계에서는 2023년 월평균지급액 26만원⁵⁾에 최근 5년간 연평균상승률 0.7%⁶⁾ 적용

[표 4] 생활조정수당 지급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2027~2031년

구분	2027	2028	2029	2030	2031
대상자 수(a, 명)	16	16	16	16	16
월 지급단가 (b, 만원)	27	27	27	27	27
추가재정소요(a×b×12, 백만원)	52	52	52	52	52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 추계결과, 개정안에 따라 독립유공자에 2차 봉기 참여자를 포함하는 경우 보상금, 생활조정수당 등의 지급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는 2027년 104억 9,900만원, 2031년 125억 2,000만원 등 향후 5년 동안 총 574억 6,100만원으로 추계됨

[표 5]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2027~2031년

(단위: 백만원)

구분	2027	2028	2029	2030	2031	합계
보상금	10,447	10,909	11,429	11,948	12,468	57,201
생활조정수당	52	52	52	52	52	260
합계	10,499	10,961	11,481	12,000	12,520	57,461

주: 교육지원, 의료지원, 대부지원, 양로지원, 요양지원 및 재가복지서비스는 추계 대상에서 제외하고 보상금과 생활조정수당에 한정하여 추계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5) 26만원 = 독립유공자 및 유족 생활조정수당 지급액 9억 1,800만원 ÷ 독립유공자 및 유족 지급 대상자 289명

6) 3인가구 이하 기준중위소득 50% 이하자의 최근 5년간 연평균상승률 0.7%(2020년 214천원, 2021년 220천원, 2022년 220천원, 2023년 220천원, 2024년 220천원)

IV. 부대의견

- 본 추계는 2차 봉기 참여자의 유족 등 지원대상자 수를 합리적으로 추계하는 데 한계가 있어 교육지원, 의료지원, 대부지원, 양로지원, 요양지원 및 재가복지서비스 등은 추계에서 제외하고, 추계가 가능한 보상금과 생활조정수당에 한정하여 추계한 결과로 향후 실제 추가재정소요는 이를 상회할 것으로 예상됨

V. 작성자

□ 성명

국회예산정책처	분석관	과장
행정비용추계과	이미연	김안나

□ 대표연락처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이미연	02-6788-4661	mylee@assembly.go.kr